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232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한화생명보험(주)
임 원	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주의 상당, 견책 상당) 통보 2명
직 원	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

2. 조치내용

○ **(금감원 원안)**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1조 등에서 규정하는 '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'에 대하여 한화생명보험(주)에 과태료 96백만원 부과

○ **(수정의결)**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태료 80백만원 부과

제재대상	금전제재	
	원안	수정안
한화생명보험(주)	과태료 96백만원 부과	과태료 80백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**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**

(가) 정보처리시스템 재개발시 통제절차 등 보호대책 위반

(舊)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14조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

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재개발 시 전산장애로 인해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나

회사는 차세대시스템 구축과정에서 퇴직연금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미흡하게 실시하는 등 내규「데이터베이스 관리지침」통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였고

그 결과 오류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퇴직연금 조회·청구 등 관련 전자금융업무가 ○시간○○분간 중단(2022.9.30.)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

또한 회사는 차세대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신규 서버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·확인 업무를 미흡하게 수행하는 등 내규「서버 운영 관리지침」통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, 오픈 후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전자금융업무(홈페이지·모바일을 통한 계약조회 등) 중단사고가 2회(2022.9.30. ○○분간, 2022.10.4.○○분간) 발생하였음

(나) 프로그램 통제의무 위반

(舊)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시 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테스트*를 실시하여야 하나

* 프로그램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(기밀성), 정확하고 완전한 형태로(무결성), 사용이 요구될 때 지정된 기능을 적시에 수행(가용성)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

회사는 차세대 시스템에 적용될 전자금융 관련 프로그램 테스트를 미흡하게 실시하여 시스템 오픈 이후 약 3개월간(2022.9.13. ~12.14.) ①보험료 출금오류, ②보험금 중복지급 및 ③보험계약대출원리금 및 이자 출금오류 등 전산오류가 다수 발생하였음(총 사고금액 약 ●●억원)

나. 근거법규

○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1조 제2항, 제51조 제1항
○ (舊)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7조, 제14조 및 제29조
○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 제1항 및 제3항